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43
----------	-----

2023년 4월 21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임규호 의원(찬성자 10명)

나. 제안일 : 2023년 3월 29일

다. 회부일 : 2023년 4월 3일

라. 상정일 :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3년 4월 2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임규호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제1호 전자게시대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여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갖추고 다양한 시각적 영상효과를 사용해 효과적인 정보전달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

상공인과 골목형상점가의 홍보를 돕고 불법현수막 감소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전자게시대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규정함(안 제9조의2제3항제1호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간 : 2023.4.6. ~ 2023.4.10.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결과

○ 서울시장(도시경관담당관) : 수정가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점포가 운집한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 개정(2020.8.12.시행)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하고자 하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p>제9조제3항제1호(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p>	<p>제9조제3항제1호(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p>

나. 검토 내용

(1) 관련 법에서의 규정사항

- 현행 조례 제9조제3항제1호는 상위법 시행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 설치·관리에 관한 조항으로, 현행 조례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의 나목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전통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을 ‘골목형상점가’라 정의하고(전통시장법 제2조제2항의2)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행조사,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하여는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여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각종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전통시장법 제11조의2) 개정하였음
-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일하게 각종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관련 법인 「전통시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 「전통시장법」 제2조제2항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1)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²⁾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함. 이는 일정개소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한 구역을 직접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정된 사항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현행 조례의 상위법 시행령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은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전자게시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자게시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광고의 표시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므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정하는 ‘골목형상점가’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자게시대의 기존 설치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은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추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 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의2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구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곳’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자치구 조례는 위임조례로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붙임1. 자치구 골목형상점가 조례 제정 현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참고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골목형상점가 조례가 제정되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중 16개 자치구에, 39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어 있음(붙임2. 자치구 골목형상점가 조직현황)

< 자치구별 골목형상점가 지정현황 (2023.3.31. 기준) >

※ 서울시 내 16개 자치구, 골목형상점가 39개소 지정	
중 구(10)	신당 미래유산 먹거리 골목형상점가, 동화동 골목형상점가, 필동 골목형상점가, 충무로 골목형상점가, 약수시장 골목형상점가, 다산마을상가거리 골목형상점가, 장충남소영길 골목형상점가, 충정로56출구 골목형상점가, 명동남산골 골목형상점가, 신당오길 골목형상점가
성동구(2)	신금호역 골목형상점가, 성수역 골목형상점가
광진구(1)	면곡시장
종랑구(2)	태능골목형상점가, 상봉먹자 골목형상점가
성북구(5)	정릉골 골목형상점가, 꿈의숲 장곡 골목형상점가, 성북천 골목형상점가, 배밭골 골목형상점가, 종암북바위길 골목형상점가
도봉구(1)	도봉산옛길 골목형상점가
서대문(2)	홍제 골목형상점가, 경찰청 골목형상점가
금천구(1)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
영등포(2)	선유도역 골목형상점가, 대림중앙 골목형상점가,
동작구(2)	상도약수 골목형상점가, 상도도깨비 골목형상점가
관악구(5)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강남골목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강동구(1)	고덕 골목형상점가

은평구(1)	불광역자골목 골목형상점가
양천구(2)	서서울 골목형상점가, 신월3동시장 골목형상점가
서초구(1)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송파구(1)	가락골 골목형상점가

(2) 전자게시대 운영현황

- 현행 조례 제9조제3항제4호에서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는 각 자치구별 옥외 광고물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의 자치구에서 디지털 전자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각 자치구 옥외광고물 심의를 통해 전자게시대의 본래 운영 목적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홍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전통시장 광고 외 기업광고 등은 승인을 반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서 현행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전자게시대는 총 8개지역, 11개소 운영중임

<전통시장 지주이용 전자게시대 설치 현황(2023.4.7. 기준) >

	전통시장명	위치(주소)	설치개수	게재절차(운영방법)	표출기간(주기)	구좌수(월기준)	자치구 심의여부
1	인왕시장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사거리(홍은동 52)	1	광고업자 광고수주 (BTO방식)	1달	25구좌	자치구 심의대상
2	성대전통시장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12길 1	1	상인회 협의 운영 (전통시장 내 상가 대상)	3달	55구좌	자치구 심의대상
3	공릉동 도깨비시장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583 일대	2	도깨비시장 홍보영상 반복 송출	반복송출	없음	자치구 심의대상
4	용답상가시장	성동구 살곶이길 159	1	광고업자 광고수주, 상인회 협의	1달	25구좌	자치구 심의대상

5	남구로시장	구로구 구로동로 26길 2	2	현재 미운영	-	-	자치구 심의대상
6	대조시장	은평구 불광역 8번출입구	1	광고업자 광고수주 (BTO방식)	15일/1달	25구좌	자치구 심의대상
7	아현시장	마포구 굴레방로9길 3	1	상인회 협의 (아현시장상인회)	반복송출	없음	자치구 심의대상
8	개포시장	강남구 개포동 186-2	2	상인회 협의 (자치구운영)	반복송출	없음	자치구 심의대상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지원 근거법령 및 인정기준〉

구 분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관련 법령		전통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법
인정방법		시·군·구에서 인정 후 공고	별도 인정절차 없음	시·군·구의 조례로 지정
인정 기준	구역 면적	면적이 1,000㎡ 이상*인구역으로 일정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구역면적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구역면적 2,000㎡ 이내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업종 및 점포수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 50개 이상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 30개 이상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 점포수 기준(30개 이상)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조례로 조정 가능
	점포 비율	도·소매점포 50% 이상	도·소매점포 50% 이상 (산업부 업무처리 기준)	해당 없음
온누리상품권 사용여부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사용 가능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중 「전통시장법」에 따른 구역을 규정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① 「전통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일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 ② 현행 조례의 상위법 시행령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전자게시대 설치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서 전자게시대 설치·운영을 허용한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의 광고와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직접 규정하고 있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전통시장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형상점가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구역에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함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요건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점포가 30개 이상인 구역’으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는 소상공인이 아닌 대규모 기업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9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게시대의 광고시 본래 전자게시대의 설치목적인 ‘공공의 목적 및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홍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소상공인·전통시장에 해당되지 않는 대규모 기업의 광고는 허용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 조례 및 옥외광고물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해야할 것임

- 또한 상위법 시행령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3)에서 전자게시대 설치가능구역을 명시하고 있는 바, 골목형상점가의 특성상 다수의 골목형상점가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로 설치가 가능한 전자게시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자게시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규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43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3월 29일
발 의 자: 임규호 의원(1명)
찬 성 자: 김 경, 김성준, 성흠제,
이병도, 이영실, 이원형,
임종국, 정준호, 최기찬,
한 신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9조제3항제1호 전자게시대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
가를 추가하여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갖추고 다양한 시각적
영상효과를 사용해 효과적인 정보전달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형상점가의 홍보를 돕고 불법현수막 감소로 도
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자게시대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규정함(안
제9조의2제3항제1호 추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③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항1호나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등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9조제3항제1호</u></p> <p>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p>	<p><u>제9조제3항제1호</u>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p> <p>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u>골목형상점가 등</u>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p>